

행정발전위원회 규정

제정 2016.03.01.

개정 2018.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본 대학”)의 교육목표와 발전을 위한 대학행정의 발전을 모색하는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행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조직 및 행정 시스템 구축
2. 대학의 창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 제도 개선 계획 수립 및 검토
3. 대학 행정 조직간 역할과 협력에 관한 논의
4. 기타 행정발전에 관계된 주요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지원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본 대학의 직원으로 행정부서 센터장과 전산소장, 팀장 그리고 각 스쿨(학과) 창의행정실 팀장 또는 대표 직원 1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교육지원처 팀장이 겸직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과 보직자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회의록을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관계부서와 스쿨(학과)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위원회 업무에 관계한 교직원은 위원회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 의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